

**소규모 개인납세자의 국내 로열티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관련 국세청 훈령**

Per-1/PJ/2023

**일반소득을 사용하여 소득세 계산을 수행하는 개인납세자가  
수령하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 예치, 신고 등을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 규정의 취지

- a. 순이익 계산 기준을 사용하여 소득세 계산을 수행하는 국내의 개인사업자가 수령하는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제23조와 관련, 편의성, 정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함
- b. 상기 a항에 언급된 고려사항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예치, 신고 절차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에 관한 국세청장 훈령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1조 (생략)

## 제2조

- (1) 어떤 이름과 형태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납세자 또는 고정사업장에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게 되거나, 지급될 예정인 로열티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 과세대상이다.
- (2) 제1항에 언급된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 세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의 15%로 한다.
- (3) 순소득계산법을 활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내국 개인 납세자에 대해, 제2항에서 언급된 총액은 제1항에 언급된 총 로열티 소득의 40%이다.

### 제3조

- (1) 제2조 제1항에 언급된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23조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로열티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가 이행한다.
- (2) 제2조 제3항에 언급된 개인납세자는, 제2조 제3항에 언급된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적용받기 위해, 순소득계산법을 활용한 통지서 영수증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3) 제2항에 언급된 통지서 영수증의 증빙은 소득세법 제23조 원천징수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 (4) 제2조 제3항에 언급된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제1항에 언급된 로열티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23조 상의 원천징수 계산 사례는 동 훈령의 부록에 소개된다.

### 제4조

- (1) 제2조 제3항에 언급된 국내 개인 납세자가 수령한 로열티 소득은, 독립된 근로의 국내 순소득의 일부로서 연간 세금신고 시, 신고되어야 한다.
- (2) 제3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제2조 제3항에 언급된 국내 개인납세자의 연간 세금신고 시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 제5조

#### 원천징수의무자는

- (1) 소득세법 제23조 원천징수에 따른 증빙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당사자로서 국내 개인 납세자에게 원천징수 사실의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국고에 원천징수될 세액을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 종합소득세 기간별 통지 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동 훈령은 규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자카르타에서 규정됨

2023.3.16.

국세총국장

부록 : 원천징수 계산 사례 2건

## 붙임 : 원천징수 사례

사례 A. 로열티 소득 외 별도 소득이 있는 납세자

H씨는 배우이자, 여러 베스트셀러 책을 출간한 작가이다. 2023.1월 H씨는 세무서에 2023년 순소득계산법을 활용한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H씨는 2023년 배우로서 400,000,000 RP의 수입을 받았다. 또한 2023년 8월 H씨는 책 출간으로 PT I 으로부터 100,000,000 RP의 로열티 수입을 받았다. H씨는 순소득계산법을 활용한 통지서 영수증의 증빙사본을 세무서에서 받아 PT I에 제출하였다. 예술 근로자의 순소득 계산 기준 금액은 50%이다.

상기 거래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도출된다.

1. PT I 은 H씨에게 지불한 로열티 수입에 대해,
  - (1) 소득세법 제23조상  $15\% \times 40\% \times 100,000,000 \text{ RP} = 6,000,000 \text{ RP}$ 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2) 소득세법 제23조 로열티 소득 원천징수의 증빙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H씨에게 제공해야 한다.
  - (3) 종합소득세 기간별 통지 시, 소득세법 제23조상 원천징수의 증빙을 신고해야 한다.
2. H씨의 연간 통지서에 있는 프리랜서로 인한 국내 순소득에 포함된 로열티 소득액은  $50\% \times 100,000,000 \text{ RP} = 50,000,000 \text{ RP}$  이다.
3. 배우로서 H씨의 소득은 프리랜서 소득을 포함한다. 그리고 배우로서의 소득은 H씨의 연간 세무신고상 프리랜서로 인한 국내 순소득에  $50\% \times 400,000,000 \text{ RP} = 200,000,000 \text{ RP}$  만큼 포함된다.
4. PT I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법 제23조 로열티 원천징수세액은 H씨의 연간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된다. 또한 해당 세액은 연간 과세대상소득 계산 시 공제된다.

사례 B. 로열티 소득 외 별도 소득이 없는 납세자

J씨는 많은 음반회사에서 사용되는 곡을 생산한 작곡가이다. 2023.1월 J씨는 세무서에 2023년 순소득계산법을 활용한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2023.8월 J씨는 노래사용에 대한 로열티 수입으로서, PT K로부터 4,000,000,000 RP의 로열티 수입을 받았다. 순소득계산법을 활용한 통지서 영수증의 증빙 사본을 세무서에서 받아 PT K에 제출하였다. 2023년 동안 J씨는 별도 사업활동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없다.

상기 거래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도출된다.

1. PT K는 J씨에게 지불한 로열티 수입에 대해,

- (1) 소득세법 제23조상  $15\% \times 40\% \times 4,000,000,000 \text{ RP} = 240,000,000 \text{ RP}$ 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2) 소득세법 제23조 로열티 소득 원천징수의 증빙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J씨에게 제공해야 한다.
- (3) 종합소득세 기간별 통지 시, 소득세법 제23조상 원천징수의 증빙을 신고해야 한다.

2. J씨의 연간 통지서에 있는 프리랜서로 인한 국내 순소득에 포함된 로열티 소득액은  $50\% \times 4,000,000,000 \text{ RP} = 200,000,000 \text{ RP}$  이다.

3. PT K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법 제23조 로열티 원천징수세액은 J씨의 연간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된다. 또한 해당 세액은 연간 과세대상소득 계산 시 공제된다.